

조선후기 왕실의 冊匠과 粧冊에 관한 연구

- 영조대 「璿源譜略修正儀軌」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ookbinder and bookbinding in the Late Joseon Palace

- The Analysis of *Seonwonboryak-sujeong-ugue* during King Yeongjo -

조 계 영(Cho, Gye-You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1 粧冊 用具 |
| 2. 冊匠의 職制와 活動 | 3.2 粧冊 所用物品 |
| 2.1 冊匠의 職制와 處遇 | 4. 맺음말 |
| 2.2 冊匠의 活動과 充員 | <참고문헌> |
| 3. 粧冊 用具와 所用物品 | |

< 초 록 >

본 논문은 영조대(1725-1776) 「璿源譜略修正儀軌」를 분석하여 조선후기 왕실의 冊匠과 粧冊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한국 形態書誌學에서 서책 장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특수한 분야로 인식되어 있으며, 따라서 冊匠에 대한 연구 성과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영조대 「璿源系譜記略」 수정에 대한 기록인 「璿源譜略修正儀軌」를 대상으로 冊匠의 職制와 활동을 살펴본 후, 粧冊 用具와 所用物品들을 분석하였다.

조선후기 왕실의 冊匠은 校書館의 雜織에 소속된 粧冊諸員으로 왕실서책 간행시 粧冊 전문가로서 활동하였다. 그들은 왕실서책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지니는 粧冊의 전문성과 중요도에 비해 낮은 임금과 처우를 받았다. 본고는 이러한 冊匠을 주목하여 새롭게 조명하였으며, 「선원계보기략」의 장책 과정을 고찰하여 왕실서책의 粧冊에 대한 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要語 : 왕실, 冊匠, 粧冊, 「璿源系譜記略」, 「璿源譜略修正儀軌」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newlycho@naver.com)

접수일: 2005년 8월 31일 최초심사일: 2005년 9월 2일 심사완료일: 2005년 9월 23일

<ABSTRACT>

This study has analyzed the *Seonwonboryak-sujeong-uigue*(「璿源譜略修正儀軌」, *the records about the revision of royal genealogy*) of King Yeongjo's reign to examine the bookbinder and bookbinding of royal palace in the late Joseon period. In Korean physical bibliography, the study on bookbinding is still recognized as a specific area, thus the outcome of the study on bookbinder does not exist at all. This study, having a critical mind on those issues, has focused on the *Sunwonboryak-sujeong-uigue* (「璿源譜略修正儀軌」) which is the record about the revision of King Yeongjo's reign *Seonwongyebogiryak* (「璿源係譜記略」, the royal genealogy), and so analyzed the positional organization and activity of bookbinder, bookbinding instruments and necessary goods. The bookbinder of royal palace in the late Choseon dynasty, being bookbinding-personnel belonged to Gyoseoguan's japjik, had worked as an expert when the royal books were get published. They had received low wages and treatments compared to their specialty and importance they had in the role of the preservation of royal books.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on the grounds that it gave attention to bookbinders, newly highlighted them, and proposed a model for the bookbinding of royal books through the research on the bookbinding process of *Soenwongyebogiryak*(「璿源係譜記略」).

Key words : royal palace, bookbinder, bookbinding, *Seonwongyebogiryak*,
Seonwonboryak-sujeong-uigue



1. 머리말

조선시대 왕실은 공적으로는 조선의 국권과 정통성을 상징하며, 사적으로는 왕과 왕비를 중심으로 하는 宗家이다. 조선시대 왕실 문화는 유교 통치 문화의 정수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것을 직접 창조한 수많은 匠人들의 축적된 기술과 사회·경제적 기반 위에 이루어진 것이다. 왕실 문화의 여러 실례 중에서 「璿源系譜記略」·「列聖御製」·「國朝寶鑑」 등과 같은 왕실서책은 조선시대 기록 문화의 우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¹⁾

서책은 刊印 또는 繕寫 후에 마지막으로 粧綴을 하여 완성된다. ‘粧綴’이란 서책을 粧冊하는 것으로 서책의 裝訂을 말한다.²⁾ 조선시대 법전에서는 서책의 장황을 담당하는 이를 ‘粧冊諸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官署志·儀軌 등과 같은 자료에서는 冊匠 혹은 粧冊匠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책 장정의 역사는 동양과 서양이 서책 재질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장정 형태인 두루마리는 크기와 보관 방식에 있어서 동서양이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³⁾ 서양에서는 종이로 인쇄된 책이 나오기 전까지 나무나 가죽으로 장정된 책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편, 15세기 말 독일에서는 서적제분술이 독자적인 직업으로 규정되었으며, 제본사들은 길드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였다.⁴⁾

-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왕실서책은 왕실의 족보와 문집에 해당하는 「璿源系譜記略」과 「列聖八高祖圖」 및 「列聖御製」 등을 의미함을 밝혀둔다.
- 2) 중국에서는 書畫의 裱貼을 일컫는 용어로 ‘裝潢’ 또는 ‘裝裱’를 사용해 왔으며, 서책의 장정에 있어서도 ‘裝潢’을 사용한다. 이와는 달리 조선시대 왕실의 기록에서는 서책의 장정을 뜻하는 것으로 ‘粧冊’ 또는 ‘粧綴’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粧’은 ‘粉飾’으로 꾸미다·장식하다’는 뜻이고, ‘綴’은 ‘繩束’으로 ‘줄로 묶는다’는 의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책 장정의 뜻으로 粧冊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3) 영어에서 책이나 권을 가리키는 ‘volume’은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를 가리키는 ‘voluminum’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에서 최초의 장정 형태인 두루마리를 ‘卷子裝’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책을 세는 단위를 가리키는 ‘罈’이 유래하였다.
- 4) Helmuth Hellwig. *Das Deutsche Buchbinderhandwerk*: Hirsemann Verlag 2 vols., 1962. *Das Gesicht Der Bucher: Eindande von der Gotik bis zum Jugendstil*, Museum fur Kunsthandwerk Frankfurt am Main, 1987. Claus Maywald-Pitellos. “15-16세기

동양에서의 서책 장정은 卷軸裝에서 시작되어 점차 열람과 보존에 편리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중국 문헌학계에서는李文禱의 「中國書籍裝訂之變遷」(1929년)을 시작으로 서책 장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198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연구 내용은 장정 형태의 기원 및 발전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서책 장정에 쓰인 장식과 부속품 및 역대 裝潢工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⁵⁾

이에 반해 한국 形態書誌學에서 서책 장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특수한 분야로 인식되어 있으며, 따라서 관련 연구 성과도 판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서책 장정에 대한 연구는 千惠鳳의 「韓國典籍裝潢考」(1990)에서 장황의 釋義와 형태를 고찰한 것이 최초의 연구이다. 이 논문에서는 黃紙紅絲에 의한 五針眼訂法과 菱花紋이 한국 線裝本의 고유한 장황법이며, 그 일을 담당하는 장인을 裝潢工이라고 밝힌 바 있다.⁶⁾ 근래 「조선왕조실록」을 保存과 管理의 시각으로 접근한 裴賢淑은 「조선왕조실록」의 纂修·管理·形態分析에 대해 고찰하였다.⁷⁾ 裴賢淑은 현전하는 「조선왕조실록」을 대상으로 장정의 형태를 분석하고, 종이 표지로 장정된 「조선왕조실록」의 菱花紋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배현숙의 연구 방법은 왕실서책의 장정을 접근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儀軌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儀禮를 행하고 그 시종을 정리하여 후일의 軌範으로 삼기 위해 기록한 것이다. 의례는 의례 절차뿐만 아니라 그 의례를 거행하기 위한 사전 논의와 인적·물적 자원을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璿源系譜記略」의 板本을 연구해 온 尹仁鉉은 근래 「璿源譜略修正儀軌」를 바탕으로 「璿源系譜記略」의 간행 과정을 고찰한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였다.⁸⁾

유럽의 서적제본,” 「2004 청주직지축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4).

- 5) 陳國慶, “書籍的裝飾和書外的附屬品,” 「古籍版本淺說」(中華書局, 1964), 77-85. 潘京鄭, “歷代裝潢工人考略,” 「社會科學戰線」(1986: 1), 322-329.
- 6) 千惠鳳, “韓國典籍裝潢考,” 「大東文化研究」第25輯(1990); 同著, 「韓國書誌學」(민음사, 1997), 93-107.
- 7) 裴賢淑, 「朝鮮實錄研究序說」(태일사, 2002), 同著, “朝鮮朝 保存圖書館의 始原과 發展,” 「書誌學研究」第27輯(2004).
- 8) 尹仁鉉, “「璿源系譜記略」開刊過程과 始刊本 分析,” 「書誌學研究」第14輯(1997). 同著,

이는 서지학에서 왕실서책 간행과 관련된 의례를 주목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형태서지학 연구는 조선시대 왕실의 기록문화에 기여한 다양한 匠人들에 대한 조명과 그들이 담당하였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고찰이 시도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⁹⁾

왕실서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璿源系譜記略」·「列聖御製」·「國朝寶鑑」의 편찬 과정을 기록한 의례에는 粧冊의 주체인 冊匠에 대한 정보와 粧冊에 사용되었던 물품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영조대(1725~1776) 52년 동안 28회 수정된 「璿源系譜記略」에 대한 기록인 「璿源譜略修正儀軌」 22건을 분석하고자 한다.¹⁰⁾ 본고는 영조대 「선원보략수정의례」 분석을 통해 조선후기 왕실의 冊匠과 粧冊에 관해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법전 및 官署志 등에 규정된 冊匠의 職制와 處遇에 대해 살펴본 후, 冊匠의 활동과 冊匠 充員을 위한 宗簿寺의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冊匠이 粧冊할 때 사용한 用具와 粧冊에 사용된 물품들을 통해 粧冊 過程을 고찰하고자 한다.

“「璿源系譜記略」 肅宗4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第2輯(2000). 同著, “璿源系譜記略」 肅宗2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第22輯(2001). 同著, “「璿源系譜記略」 肅宗28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第27輯(2004). 「璿源系譜記略」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으로는 洪順敏, “조선후기 王室의 구성과 璿源錄,” 「韓國文化」 11(1990). 同著, “조선후기 《璿源系譜記略》 開刊의 추이,” 「奎章閣」 13(1990) 참조.

9) 미술사에서 조선시대 왕실의 장인과 화원을 조명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성과를 참조할 수 있다. 張慶姬, “朝鮮後期 凶禮 ‘都監’의 匠人 研究,” 「美術史論壇」 第8號(1999). 同著, “朝鮮後期 王室의 玉工藝匠人 研究,” 「美術史研究」 第15號(2001). 朴廷蕙, “의례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화원,” 「美術史研究」 第9號(1995). 姜寬植,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 (돌베개, 2001).

10) 「璿源系譜記略」의 28회 수정에서 1726년, 1731년, 1760년을 제외한 25회 수정에 해당하는 22건의 「璿源譜略修正儀軌」가 현재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의례 3건의 차이는 한 해에 두 차례의 수정이 이루어진 1740년(3월, 8월)과 1744년(1월, 10월), 1772년(8월 11월)의 의례가 한 건으로 합쳐져 있기 때문이다. 선원보략의 수정은 宗簿寺에서 담당하였는데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중부시 내에 校正廳을 설치하여 주관하였다. 영조대 「선원보략수정의례」 22건 중 10건은 중부시에서 맡은 것이고 교정청에서 주관한 것은 12건이다. 「선원보략수정의례」 22건의 表題는 다양하고 卷首題는 매우 길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가장 많이 쓰인 표제인 「선원보략수정의례」로 통칭하고자 한다. 또한 이하에서는 「선원계보기략」을 「선원보략」으로 약칭하고자 한다.

2. 冊匠의 職制와 活動

2.1 冊匠의 職制와 處遇

「經國大典」(1485년)의 <吏典> 雜職에 따르면 校書館에는 雜職에 해당하는 관직으로 守藏諸員 44員과 粧冊諸員 20員이 있었다. 수장제원은 교서관에 소장된 冊板·祭祀用 香祝·活字 등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으며, 장책제원은 서책을 장책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각기 2番으로 나누어 교대 근무하였으며, 근무 일수 900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주었다. 그러나 중(淸)에 이르면 그 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잡직은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근무 평정을 하는 四都目을 적용하였다. 「경국대전」 <吏典>에 나와 있는 잡직의 품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經國大典」 <吏典> 雜職의 品階

正六品	供職郎, 勳職郎	從六品	謹任郎, 效任郎
正七品	奉務郎	從七品	承務郎
正八品	勉功郎	從八品	赴功郎
正九品	服勤郎	從九品	展勤郎

세조 7년(1461)의 실록기사를 보면 粧冊書員이 8품에서 去官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7품에서 거관할 수 있도록 吏曹에서 요청하였다.¹¹⁾ 이것으로써 「경국대전」 이전에는 粧冊諸員을 粧冊書員으로 불렀으며, 8품에서 거관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성종 3년(1472)의 실록기사에는 「睿宗大王實錄」 간행을 끝낸 후 粧冊書員 貢始殷과 金得中을 取才한 뒤에 우선 敍用하게 했고, 장책서원 崔繼江은 每 1일에 別仕 3일을 주게 하였다.¹²⁾ 즉, 「예종대왕실록」 간행시 장책

11) “吏曹据校書館提調單字啓 列字書員役事甚苦 加以八品去官 求屬者少 今以諸司吏典移差者 亦憚苦務 多托故還鄉 照得七品都目去官之額 今定五十 請依議政府典吏都目例 一年二人 次年三人 受七品職去官 粧冊書員 亦依此例 從之” 「世祖惠莊大王實錄」, 卷第二十五, 世祖 七年 七月 辛丑條.

서원의 근무일을 別仕로 규정하여 하루 근무를 3일 근무로 계산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¹³⁾

「경국대전」에서는 근무 일수가 많은 수장제원 2인과 장책제원 2인을 西班에 보내어 敍用하도록 규정하였다. 서반에 서용된 자 가운데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원하는 자는 근무 일수 193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주되 정 3품에 그쳤다. 도서관의 잡직 중 從八品職인 司准과 從九品職인 司勘은 守藏諸員의 遞兒職이고, 장책제원은 품계만 있을 뿐 職은 없었다. 법전 및 관서지에 나타난 장책제원의 소속 관서와 인원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2> 粧冊諸員의 所屬官署와 人員

法典 및 官署志	官 署	人 員	
經國大典(1485년)	校書館	粧冊諸員 20員	雜職
弘文館志(1784년)	弘文館	裝冊諸員 1人	率屬
侍講院志(1784년)	侍講院	粧冊諸吏 1人	率屬
書雲觀志(1818년)	書雲觀	冊匠 1名	吏隸
大典會通(1865년)	校書館	粧冊諸員 20員	雜職
六典條例(1867년)	校書館	粧冊諸員 12名; 2名 內閣大廳直兼	吏胥
	弘文館	粧冊諸員 1名	吏胥
	世子侍講院	粧冊諸員 1名	吏胥
	世孫講書院	粧冊諸員 1名	吏胥
	觀象監	冊匠 1名	工匠

「경국대전」에 규정된 장책제원의 소속과 인원은 「大典會通」에서도 변함없이 도서관의 잡직에 20員이 있었다. 정조대의 李萬運이 筆寫한 「國朝摺紳案」

- 12) “粧冊書員貢始殷金得中 書吏李先枝李貫林取才後 爲先敍用 書員吳愼孫加資 粧冊書員崔繼江 書吏金雲朱煥金孝治鄭哲智申敬利李審嚴自利李文興宣漢文 每一日給別仕三” 「成宗康靖大王實錄」, 卷第十八, 成宗 三年 五月 丙午條
- 13) 한 관직의 임기는 실제로 근무하는 日數인 ‘通常勤務 一日’을 ‘仕’로 계산하여 근무일수를 정하였다. 원래 정해져 있는 근무일수를 ‘元仕’라고 하며, 특수한 작업이나 임시적인 근무에 대해 특별히 매겨주는 근무일수를 ‘別仕’라고 한다.

內篇을 보면 교서관 잡직에 唱准 10員과 補字官 1員이 있고, 吏屬 아래에 주장 제원 44員과 장책제원 20名이 나와 있다.¹⁴⁾ 이것으로 볼 때 영조대 교서관의 장책제원도 20員이 소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교서관 외에도 서책을 주장하고 있거나 교육과 경연이 행해지는 곳에서는 서책의 보존을 위한 장책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장책이 필요한 관서인 弘文館·侍講院·書雲觀에서 장책제원 1人을 두고 있음을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六典條例」(1867년)에는 교서관에 12員의 장책제원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는 앞서의 「경국대전」이나 「대전회통」에서 규정되어 있는 장책제원 20員에서 8員이나 감원된 것이다. 더욱이 12명 중 2명은 內閣 즉 奎章閣의 大廳直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육전조례」에는 교서관 외에 弘文館·世子侍講院·世孫講書院에 장책제원 한 명이 吏胥로서 규정되어 있으며, 觀象監에는 冊匠 한 명이 工匠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인원은 각 관서지에 기록된 장책제원의 수와 일치하여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대 「璿源譜略修正儀軌」와 같은 연대기 자료는 「선원보략」 수정이라는 사안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과 인원을 어떻게 조달하였으며, 임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기록들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다. 의궤에 기록된 임금은 각 노동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라 사안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용할 賃金支給標準이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노동자를 크게 범주화시켜서 범주별로 임금지급표준을 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임금경제를 운영하였다.¹⁵⁾

「선원보략수정의궤」에 나오는 하급 職役 중 임금지급표준과 관련된 범주는 員役과 匠人이다. 員役은 書吏·書員·庫直·使喚·使令과 같은 吏胥 및 阜隸를 말한다. 員役은 관청에 소속되어 관청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하급 중

14) 이 필사본은 첫머리에 이만운이 1781년에 쓴 「小識」가 있다. 그러나 교서관이 1782년에 奎章外閣에 속하게 된 사실이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필사 시기는 1782년 이후로 추정된다. 「경국대전」의 司准 1員과 司勘 1員을 「續大典」(1746년)에서 唱准 8員과 補字官 1員으로 改稱하였다.

15) 임금지급표준은 17-18세기 전만 동안은 대부분 그대로 집행되었다. 박이택, “서울의 숙련 및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1600-1909 「의궤」 자료를 중심으로,”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 후기』(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42-45.

사자이다. 各色匠人 또는 諸色工匠으로 불리는 匠人은 숙련공으로서 그 전문 분야에 따라 다양한 장인이 존재하였지만 동일한 임금지급표준이 적용되었다. 의궤에 등장하는 장인은 中央各司, 지방관청, 軍門에 소속된 軍匠과 私匠이다. 이 장인들은 왕실의 의례가 있을 때 동원되어 의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제조하였다.

의궤에 나타나는 장인의 임금은 日給으로 實役日子에 따라 料米와 價布를 지급하였다.¹⁶⁾ 「선원보략」 수정시 赴役 工匠들의 料米와 價布는 호조와 병조에서 지급하였다. 호조의 分差算員이 교정청에 나와 장인들의 수와 實役日子를 조사한 후, 前例를 相考하여 교정청에 이들의 요미를 지급하였다. 또한 교정청은 장인들의 價布를 지급하기 위해 병조에 關을 보냈다. 이 때 호조에서 지급한 요미와 대조하여 가포를 지급하라고 戶曹料關子를 粘連하여 보내기도 했다.¹⁷⁾

영조대의 員役과 工匠들이 평균적으로 받은 요미와 가포는 料米 3升 과 價布 木 1尺1寸 이었다.¹⁸⁾ 장인은 자신이 소속된 관청의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특별한 국가적 사안에 동원될 때 요미와 가포 외에 點心米와 飯饌價 및 賞格 등 다양한 명목의 지급을 받았다.¹⁹⁾ 「선원보략」 수정을 마친 후 서책을 진상하면 임금은 교정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올리게 한다. 임금의 전교

- 16) 「선원보략수정의궤」에서 價布는 料布 또는 役布로도 기록되어 있다. 의궤에 匠人의 임금으로 價布 1疋을 지급한다고 할 때, 여기서 價布 1疋은 마포(布)가 아닌 면포(休)疋을 의미한다. 포(布)는 면포(休) 이전의 지급수단이었으며, 면포는 포를 대체한 것이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포(布)를 사용한 것이다. 다만 의궤에서 포가 원래의 마포를 의미할 때는 賞格으로 지급되는 경우와 물건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布를 진배할 때이다. 박이택, 앞의 글(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65.
- 17) “爲相考事 今番 瑿源譜略修正時 赴役爲在 諸色工匠等 價布 依戶料上下次 同戶曹料關子 貳張 粘連以送爲去乎 卽爲 磨鍊上下向事” 「瑿源譜略修改時儀範」(1927년) 十二月十八日 兵曹公事. 「瑿源譜略修正時校正聽儀軌」(1735년) 十一月十三日 兵曹公事.
- 18) 이에서 예외적인 경우는 針線婢와 使喚軍 그리고 磨板軍이다. 침선비는 尙衣院 의官婢로서 다른 장인보다 1升 적은 2升의 요미를 받았으며, 요포는 다른 장인들과 동일한 木 1尺1寸을 받았다. 使喚軍은 요미 2升과 木 2尺2寸의 요포를 받았고, 磨板軍 요미 2升과 木 2寸의 요포를 받았다.
- 19) 선원보략을 편각하기 위해 동원된 각수의 경우 近畿가 아닌 지방에서 올라 온 이들이 많기 때문에 취사를 하기 위한 방과 쌀감(炊飯木) 및 도구 등이 제공되었으며, 飯饌價로 鹽과醬이 지급되었다.

에 의해 보고되는 교정 참여자의 명단이 「別單書啓」이다. 별단서계는 삼등급으로 나누어 포상(賞格)이 내려진다. 별단서계의 一等 에는 寫字官·算員·書員·書吏·庫子·使令·書員·唱准·冊匠·刻手가 해당한다. 冊匠은 員役으로서는 최하위였으며 工匠으로서는 일등의 지위에 있었다. 1751과 1753년 「선원보략수정의례」에 의하면 별단서계 일등은 玄木 3疋을 상급하였다.²⁰⁾

영조대 「선원보략수정의례」 22건 가운데 책장의 點心米에 대한 언급은 1735년에 매일 1升이 지급하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²¹⁾ 이와는 달리各司의 員吏에게는 호조에서 근무 일자를 세어 점심미를 지급하는 것이 常例이다.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 3월부터 8월까지 서리들에게 점심료로서 米 1升씩을 지급하였으나 秋冬에는 원래 점심미를 마련하는 일이 없다.²²⁾ 흉년이 들면 호조의 지출삭감 조목 가운데 각사 員吏의 點心과 工匠의 給料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공장에게 점심미를 지급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는 유교적 이념에 의해 商人과 匠人을 賤隸로써 인식하였다. 조선 후기 왕실의 冊匠은 왕실서책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지니는 粧冊의 전문성과 중요도에 비해 낮은 임금과 처우를 받았다.

2.2 冊匠의 活動과 充員

「선원보략」 수정은 宗簿寺에서 선원보략 수정 사실에 대해 임금에게 啓를

-
- 20) 二等은 豆錫匠·印出匠·小木匠·蹄刻匠·木手·多繪匠·漆匠이 해당하며, 賞格으로 玄木 2疋을 받았다. 三等은 磨鏡匠·磨板軍·紙匠·使喚軍·小引鉦·銀匠·匙匠·鑄匠·穿穴匠·針線婢·小引鉦·屏風匠·治匠이 해당하며, 賞格으로 玄木 1疋을 받았다. 「瑤源譜略修正儀軌」(1751년) 閏五月初二日 戶曹輸送. 「瑤源譜略儀軌」(1753년) 十月初二日 戶曹輸送.
- 21) “自唱准寫字官書員等 及諸色匠人等 自二月爲始 點心米每日每名壹升式上下 而至於磨板軍使喚軍段點心米勿論事” 「瑤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1735년) 員役工匠等處 自始役至畢役 料布上下秩.
- 22) “戶曹爲相考事 節到付關內節該 本廳書吏九人 九月爲始 點心米磨鍊上下事關是置有亦 秋冬兩朔 元無點心米磨鍊之事是置 相考施行爲只爲” 「瑤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1735년) 十一月十三日.

올려 舉行條件과 시기를 裁可 받아 시행하는 것이다. 「선원보략」수정시 교정청을 설치하는 것은 「선원보략」수정에 들어가는 물력의 多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중대할 경우 旬管堂上 등의 소속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²³⁾ 조선후기 상설아문들은 대부분 자신의 재정자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었지만, 교정청은 임시기관이기 때문에 「선원보략」수정에 필요한 재원을 다른 아문으로부터 取用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교정청은 필요한 물력을 마련하기 위해 호조와 공조를 비롯하여 長興庫·繕工監·濟用監·司贍寺 등에 甘結을 내렸다.²⁴⁾

甘結에는 「선원보략」수정에 들어가는 각종 물품의 구체적인 분량과 공급 시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인원의 수급과 징발에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감결 외에 교정청에서 호조나 교서관 등과 같은 아문에 보내는 공문서로서 關이 있다. 이 關을 받은 해당 관청은 교정청의 요구 사항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적어 關이나 牒呈을 올린다.²⁵⁾ 關 또는 첨정을 받은 교정청의 당상은 그 내용에 대한 교정청의 입장이나 요구 사항을 題辭(題辭)으로 적거나, 關 또는 甘結을 작성하여 粘連하여 보냈다.²⁶⁾

영조대 「선원보략」의 粧冊을 담당했던 冊匠은 대부분 교서관에 소속된 장책제원이었다. 그 중에서도 朴有信·趙贊成·李厚成·李枝成·李枝萬·金壽聃 등은 「선원보략」수정시 5회 이상 동원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왕실에서 인정한 善手冊匠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선원보략수정의례」에는 책장의 총 인원수에 맞는 책장의 이름이 모두 기록된 것이 아니고, 賞格이나 요미와 가포를 지급할 때 주요한 책장의 이름과 총명수가 나와 있다. 영조대 「선원보략수정의례」에 언급된 冊匠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23) “事體至重大 若無設廳之舉 則非所以重事體專主管之意 至於所入雜物多少 亦不係於設廳與否 而旬管堂上校正等官 俱無屬處 事勢難便” 『璿源譜略修改時儀範』(1727년) 十月十八日.
- 24) 甘結이란 상급관청에서 체결한 바를 하급관청에서 실시하도록 내리는 문서이다.
- 25) 牒呈은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에 올리는 문서로 相考·牒報·上送·馳報 등의 내용을 갖고 있다. 關은 同等以下の 官府 상호간에 收受되는 문서이다. 關의 내용은 두 관청 간의 관련있는 사무를 相考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 26) 『璿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1735년) 七月二十日.

<표 3> 英祖代 「璿源譜略」의 粧冊을 담당했던 冊匠

番號	年度	粧冊諸員(冊匠)	料米	價布	主管處	「의궤」
1	1725	朴有信 趙贊成 南三萬 僧軍冊匠 名等 12名	2升	-	校正廳	장2-3838
2	1727	朴有信 趙贊成 崔得男 朴孝男 朴贊信 吳弼周 李五成 金起成 金永壽 李德昌	2升	-	校正廳	규14022
3	1735	趙贊成 吳弼周 朴有信 朴孝男 李枝成 李厚成 朴世泰 等 16名	2升	1尺1寸	校正廳	장2-3845
4	1736	趙贊成 朴有信 吳弼周 李德昌 等 6名	3升	1尺3寸	宗簿寺	장2-3839
5	1739	趙贊成 等 10名	3升	1尺1寸5分	校正廳	규14029
6	1740	趙贊成 朴孝男 朴有信 李德昌(3月) 趙贊成 朴有信 李枝萬 李枝成(8月)	3升	1尺1寸	宗簿寺	장2-3850
7	1744	趙贊成 金起星 李厚成 李厚徵 李枝成 李枝萬 等 14名	2升	1尺1寸	校正廳	장2-3842
8	1747	趙贊成 李枝成 李枝萬 金壽聃 李世徵 等 7名	3升	1尺1寸5分	校正廳	장2-3846
9	1748	趙贊成 李厚成 李枝萬 金壽聃 李世徵 李起徵	3升	1尺1寸	校正廳	장2-3854
10	1751	李厚成 李枝成 李枝萬 趙贊成 李德昌 韓戊辰 等 10名	3升	1尺1寸	宗簿寺	규14039
11	1752	李厚成 金壽聃 劉興瑞 林興金 李枝成	3升	1尺1寸	宗簿寺	장2-3851
12	1753	金壽聃 等 15名	-	-	校正廳	장2-3843
13	1754	金壽聃 等 12名	-	-	校正廳	장2-3844
14	1755	金壽聃 鄭世萬 韓壽昌 趙壽億 等 12名	-	-	宗簿寺	장2-3852
15	1756	粧冊匠 善手者 5名	3升	1尺1寸	宗簿寺	장2-3853
16	1757	金壽聃 趙壽億 金壽耆 鄭世萬 韓時昌 等 6名	3升	1尺1寸	宗簿寺	장2-3848
17	1758	金壽耆 等 5名	-	-	宗簿寺	장2-3858
18	1759	-	-	-	宗簿寺	규14067
19	1764	韓壽昌 等 4名	-	-	校正廳	장2-3855
20	1771	趙壽億 等 6名	-	-	校正廳	장2-3856
21	1772	趙壽億 等 8名	-	-	校正廳	장2-3857
22	1776	金壽耆 韓壽昌 等 5名	-	-	宗簿寺	규14085

*표에 사용된 '-'는 「선원보략수정의궤」에 기록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교서관의 冊匠만으로 장책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교정청은 訓練都監 소속 軍兵 중의 冊匠이나 北漢山城의 僧軍 가운데 冊匠을 起送하도록 하였다.²⁷⁾ 다음의 사례들은 「선원보략」 수정시 冊匠을 充員해야 하는 상황과 이에 따른 교정청의 업무 처리를 잘 보여 준다.

영조 즉위 후 처음 시행하는 「선원보략」 수정은 1724년 10월 4일에 宗簿寺 郎廳이 提調에게 올린 稟目에서 시작되었다. 1725년 8월 17일 교정청에서 北漢 僧將에게 「선원보략」 粧冊에 필요한 僧軍冊匠 4명을 정송하라는 감결은 내렸다. ‘北漢僧將’이란 북한산성에 있는 11개의 절에서 僧軍을 거느리고 산성을 지키는 자이다.²⁸⁾ 선조 임진왜란 초기에 廟堂이 稟旨하여 승장에게 都摠攝이란 칭호를 내려 주었다. 도총섭은 그 뒤에 폐지하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하면서 만일 승려에게 役事를 시킬 일이 있을 경우 摠攝을 정하여 役事하는 諸僧을 관장하도록 하였던 것이다.²⁹⁾

1725년 교정청은 북한산성에 거하는 僧軍 가운데 冊匠 외에 善手刻手 및 守直僧軍 등의 정송을 승장에게 감결로 내린 바 있다.³⁰⁾ 승군은 기본적으로 自備糧 扞役 즉 식량조차 스스로 부담하는 무상동원의 예에 의해 동원되었다. 물론 승군을 항시 무상동원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무상동원을 하기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募軍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승군에게 지급하였다.³¹⁾

27) “各司匠人成案 藏于本曹本司 最緊匠人有闕 勿拘軍士保率官屬公賤 以可當人充定” 「續大典」 「工典」 工匠.

28) 北漢山城에는 摠戎廳에 소속된 僧倉을 둔 重興寺 · 鎮國寺 · 祥雲寺 · 西巖寺 · 國寧寺 · 圓覺寺 · 扶旺寺 · 普光寺 · 輔國寺 · 龍巖寺 · 太古寺가 있었다. 「萬機要覽」 「摠戎廳各倉庫」

29) “夫都摠攝 乃在先朝亂初 廟堂稟旨 賜僧將之號也 厥後或廢或仍 如有役僧之事 則定以摠攝 管役諸僧 至今行之” 「光海君日記」 第二十二 癸卯條

30) “右甘結爲急急舉行事 節啓下教 今此璿源譜略釐正時 刻役甚爲浩繁是如乎 善手刻手拾名 今月二十九日領來現身于本廳事” 「璿源譜略改修時儀軌」(1725년) 五月二十七日 甘結. 「璿源譜略改修時儀範」(1727년) 十月十九日 甘結.

31) 윤흥출은 1630-1757년까지의 승군 동원 사례들을 정리한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18세기 전반까지 승군은 활발하게 동원되었다고 한다. 윤흥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142.

또한 1725년 「선원보략」 수정시 訓練都監 軍兵 南三萬은 冊匠으로 교정청에서 赴役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임금의 행차가 있을 예정이었다. 이때 「선원보략」 수정은 진상일자가 임박해오는데 잘못된 판각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정청은 남삼만을 이번 행차에 특별히 수행역을 면제해 주도록 요청하는 關을 훈련도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³²⁾

1735년에 「선원보략」 수정시에는 총 16명의 책장이 織衣 12件 84冊 과 紙衣 218件 1,526冊 의 「선원보략」을 장책하였다. 이 중 「선원보략수정의궤」에 이름이 명시된 책장은 趙贊成·吳弼周·朴有信·朴孝男·李枝成·李厚成·朴世泰이다. 이 외의 冊匠 9명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 훈련도감 소속 軍兵인 金修恒이 포함되어 있다. 교정청은 1件 7冊 으로 이루어진 「선원보략」 총 230件 1,610冊 을 장책하기엔 校書館 冊匠만으로는 부족하여 훈련도감 소속 冊匠인 趙德山의 定送을 요청하는 9월 25일자 關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한 9월 30일자 훈련도감의 답은 훈련도감 軍兵 가운데 冊匠 趙德山이라는 이름은 없기 때문에 起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조덕산은 1733년 「선원보략」의 장책에 참여하지 않았다.³³⁾

10월 22일 교정청은 다시 훈련도감 소속 軍兵 중 冊匠 金修恒을 起送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도 훈련도감은 冊匠 金修恒이 軍案에 없기 때문에 기송할 수 없음을 11월 7일에 알려왔다. 교정청은 당일에 訓練都監에 關을 보내 金修恒이 冊匠이 아니고 補貼匠임을 밝히고, 進上과 頒賜 冊子の 冊衣를 補貼 하기 위해 金修恒을 기송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하여 훈련도감 軍兵인 배첩장 김수항은 교정청에서 부역하게 되었다.³⁴⁾

그런데 1월 초에 김수항은 임금의 舉動을 수행해야 한다고 白活(白活)을 올려 잠시 놓아주었는데, 그는 수일이 지나도록 교정청에 나타나지 않았다. 교정

32) “爲相考事 今此璿源譜略修正時 貴都監軍兵南三萬 以冊匠今方赴役爲如乎 進上日字臨迫 乙仍于 咎刻不離是去乎 今番行幸教是 特爲頻減 俾無未及生事之弊行事” 「璿源譜略改修時儀軌」(1725년) 八月二十四日 訓練都監公事

33) 「璿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1735년) 九月二十五日 訓練都監公事, 九月三十日.

34) 「璿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1735년) 同月二十二日 訓練都監公事, 十一月初七日, 十一月初七日 訓練都監公事.

청이 사람을 보내 推問해보니 훈련도감에서 김수항을 잡아 가두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교정청에서는 「선원보략」장책이 시급하니 김수항을 起送해 줄 것을 요청했다. 9월 22일부터 다음해 1월까지 교정청과 훈련도감이 冊匠 김수항 件으로 주고 받았던 關은 「선원보략」의 粧冊을 기한 내에 마치기 위한 교정청의 역할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³⁵⁾

「선원보략수정의례」에는 冊匠들의 작업환경에 대한 몇 가지 기록들이 나와 있다. 교정청에서 冊匠이 粧冊하는 방을 ‘粧冊房’이라고 부르며, 粧冊房은 보통 좌우 雙窓이거나 쌍창 3곳과 獨窓 1곳을 내었다.³⁶⁾ 이 장책방을 만드는데 소용되는 것으로 排目を 갖춘 上層鎖와 古索金·遠山·巨勿釘·加莫金이 있다.³⁷⁾ 장책방의 내부는 楮注紙로 도배하였고 바닥은 大地衣를 깔았다. 겨울에 「선원보략」수정이 진행될 때는 溫埃木 1丹이 매일 장책방에 進排되었으며, 장마철에는 印出紙의 습기를 건조시킬 點火木이 1丹이 매일 진배되었다.³⁸⁾

「선원보략」수정을 시급히 거행할 때에는 員役과 工匠들은 夜役을 하기도 하였다. 이 때 원역과 공장들이 통행에 구애받지 않도록 교정청은 ‘勿禁帖(물금지)’를 발급해 주었다.³⁹⁾ 그리고 訓練都監과 禁衛營·御營廳·左右捕廳·左右巡廳에 勿禁帖을 相考하여 원역과 공장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甘結을 내렸다.⁴⁰⁾ 夜役을 할 때는 冊匠마다 등잔대인 光明臺 하나씩을 두고 작업하였으며,

35) “爲相考事 今此璿源譜略修正時 貴營軍士金修恒 以褙貼匠人起送始役爲有如其 數三日 前 以舉動隨行之意白活是去乙 姑令放送矣 今至數日 尙無形影 當此後事 方張之日 多日不現事 甚痛駭乙仍于 發差推問 則自貴局治罪拘囚云是如爲臥乎所 未知犯罪輕重之如何 而莫重國役一時爲急生事丁寧是乎等以 如是論移爲去乎 卽爲參酌起送 以爲及時完役之地向事” 「璿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1735년) 一月初九日 訓練都監公事.

36) 刻手를 비롯한 各色工匠들의 거처는 所接假家'로 불렸으며 郎廳 및 校正官 의 거처는 ‘入接房舍’라고 칭했다. 「선원보략」을 담는 函櫃를 칠하는 漆匠에게는 着漆 하거나 칠을 말리기 위한 공간인 土宇를 所接假家와 별도로 만들어 주었다.

37) 「璿源譜略改修儀軌」(1740년) 三月十三日 甘結.

38) 「璿源譜略修正儀軌」(1744년) 十二月八日 甘結. 「璿源譜略改張儀軌」(1736년) 六月二十七日 甘結.

39) “各司員役 不可無侵夜學行之事 故酌量定額 成給勿禁帖 以爲憑信之地” 「萬機要覽」軍政編 一, 巡邏.

40) “本廳員役及唱准寫字官算員畫員 與使役匠手待令別工作 員役各該司進排人等 時急舉

등잔불에 쓰일 法油 2升과 함께 범유를 담은 陶瓶 1개가 소용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원보략수정의례」에는 교정청이 각 관청과 업무 협조를 위해 주고 받은 공문서들이 수록되어 있어 당시의 행정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다.

3. 粧冊 用具와 所用物品

「선원보략」의 간행은 크게 네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粧冊은 매 과정의 마지막에 이루어졌다.⁴¹⁾ 「선원보략」의 간행 과정은 첫째, 「선원보략」의 草案인 初草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⁴²⁾ 둘째, 「선원보략」 中草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이 중초는 釐正을 마친후 御覽과 睿覽을 거쳐 板刻에 들어가게 된다. 셋째, 板刻한 「선원보략」을 初再見 印出하는 과정이다. 넷째, 인출된 책자를 進上·進獻하며, 奉安·頒賜 하는 과정이다.

「선원보략」 初草의 粧冊은 초초에 쓰인 厚白紙나 精潔白紙를 가지고 假衣와 列聖御諱 付籤를 만들었다. 假衣란 정식 冊衣가 아닌 임시로 간단하게 만든 책의를 말하며, 열성어휘 부침은 임금의 이름을 가리는 ‘被諱紙’를 지칭한다.⁴³⁾ 「선원보략」 中草의 장책은 중초에 쓰인 楮注紙로 가의와 열성어휘 부침을 만들었다. 열성어휘 부침을 紅方絲紬로 할 경우에는 홍방사주의 뒷면을 厚白紙로 배접하

行之際 或有犯夜之弊 勿禁帖自本廳限畢役依例成給爲去乎 同勿禁帖相考勿侵事” 「璿源譜略修正時儀軌」(1755년) 四月初十日. 「璿源譜略修正儀軌」(1751년) 四月二十六日 廿結. 「璿源譜略改修時儀軌」(1725년) 五月三日 廿結.

- 41) 「선원보략」의 간행과정에 대해서는 각주 8) 참조.
- 42) 일반적으로 「선원보략수정의례」에서는 初草를 出草와 혼용하고 있다. 1747년에는 中草 이전에 出草와 再草의 假衣를 만드는 粧冊이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서 出草는 두 번의 初草 중 첫 번째의 初草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譜略出草厚白紙拾張 假衣次壹張 再草厚白紙拾張 假衣次壹張” 「璿源譜略修正儀軌」(1747년) 二月二十三日 廿結.
- 43) ‘冊衣’는 서책의 표지를 말하는 것으로,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듯이 책의 몸체를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힌다고 하여 冊衣라고 부른다. 중국에서는 冊衣를 ‘書衣’라고 하며 ‘書皮’ 혹은 ‘封皮’로도 칭한다. 朱養虹, 「古籍修復技藝」(文物出版社, 2001) 6-7.

었다. 초초와 중초의 장책에는 호말이 접착제로 사용되었으며, 장책이 간단하여 보통 한 명의 冊匠이 담당하였다.⁴⁴⁾

「선원보략」을 板刻하여 두 번에 걸쳐 인출을 하는데 처음으로 인출한 것을 ‘初見印出’이라 하고, 두 번째 인출한 것을 ‘再見印出’이라 한다.⁴⁵⁾ 初見印出하여 자세히 살펴 교정한 후 再見印出한다. 재견인출하여 잘못된 곳이 없으면 正本으로 삼아 본격적인 「선원보략」 인출에 들어간다.⁴⁶⁾ 초재견인출에 사용된 종이는 白紙와 厚白紙이며 이 과정에서는 粧冊이 필요치 않았다.

「선원보략수정의례」에는 이 初再見 印出紙를 두고 宗簿寺와 戶曹의 긴장 관계를 자주 볼 수 있다. 1736년 중부시에서 初再見 印出紙에 대한 문제로 수차례 호조에 보낸 關을 통해 초재견 인출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알 수 있다.⁴⁷⁾ 호조는 중부시에서 요청한 초재견 인출지와는 달리 종이를 누락하거나 바꿔 보내고 수량 또한 삭감하여 보냈다. 이에 중부시는 「선원보략」 釐正의 중요성과 節用을 원칙으로 삼아 물자를 취하고 있음을 호조에 역설하였다. 1751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호조에서 재견인출에 필요한 종이를 수송하지 않자 중부시는 재견인출이 없다면 초견인출후 誤印 여부를 考正할 수 없다며 재견인출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재견 인출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며 이미 定例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⁴⁸⁾ 중

44) 「선원보략」 수정이 완성되면 「선원보략」 초초와 중초는 彰義門밖 遮日岩에서 洗草하였기 때문에 장책을 확인할 수 없다.

45) 「선원보략」 간행과정 중 초견인출과 재견인출은 「조선왕조실록」 간행시 인출된 실록을 보충하고 교정하는 《補闕正誤》의 찬수와 같은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초재견인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6) “進上件印出 事體至重 故自前初再見印出校正後 仍以正本入印券不喻 今番舊板子中多有訛誤處乙仍于 初次印出 當改處詳審校正 再次印出 知其無欠處 然後可以正本入印” 『濬源譜略改張儀軌』(1736년) 四月二十九日 戶曹公事.

47) 중부시에서 호조에 初見 印出과 再見 印出에 들어갈 각각의 厚白紙 13권 6장을 지급하라는 關을 보냈다. 그런데 호조는 初見 印出할 것만을 白紙로 바꾸어 중부시에 보냈다. 이에 중부시는 초재견 인출은 교정후 정본으로 삼아 바로 인출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원래대로 시행할 것을 호조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호조는 끝내 중부시에서 요청한 인출 재견 厚白紙 13권6장 대신 白紙 6권13장을 수송하였다. 『濬源譜略改張儀軌』(1736년) 四月十二日 戶曹公事, 四月二十九日 戶曹公事, 五月二十九日 戶曹公事.

부시는 재견인출지를 아끼려다 오히려 교정 없이 인출된 많은 양의 「선원보략」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재견인출지에 둘러싼 종부시와 호조의 갈등은 「선원보략」 수정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시행해야하는 종부시와 국가의 물력을 절용하려는 호조의 입장 차이로 초래된 것이었다.

「선원보략」은 초재견인출지의 교정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인출되었는데, 비용의 절감을 위해 進上·進獻件과 奉安件은 改印하였고, 頒賜件은 收聚하여 수정이 필요한 張을 改張하여 돌려주었다. 「선원보략」은 進上·進獻件과 奉安件 및 頒賜件에 따라 장책의 격차가 있었다. 다음으로 冊匠이 사용한 粧冊用具와 粧冊에 소용된 물품들을 통해 粧冊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3.1 粧冊 用具

冊匠이 「선원보략」을 粧冊 할 때 사용한 粧冊 用具 들은 粧冊 을 마치면 進排處 에 돌려주었다.⁴⁹⁾ 「선원보략」의 인출이나 장책 과정에서 소용되는 용구를 파악할 때 그 수량 단위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선원보략수정의례」에는 많은 경우 용구의 수량 단위를 혼용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장책시쓰는 床을 셀 때 坐와 部 또는 介의 세 가지 단위를 혼용하고 있다. 또한 서책을 刀鍊할 때 쓰는 剪板을 요청할 때도 條·介·立·片을 수량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현재 물품을 세는 단위가 대부분 介로 한정되어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정확한 용구와 소용물품의 파악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⁵⁰⁾ 이러한 문제점은 연대기적 자료

48) “進上件譜略印出 事體重大 故自前有初再見印出之規 而既載於定例中是去乙 今番則拔去於磨鍊中 若無再見 則初見後誤印與否 盡無以考正 故自前有再見之規者 實出於慎重之道 是如乎 既載定例中 而今又刪去 則拾餘卷 若干紙束之費 卽先少 而必至大段生事而後已 其優劣何如哉亦爲 依例上下 俾爲無弊入印之地向事” 「辛未璿源譜略修正儀軌」(1751년) 三月十九日 戶曹公事.

49) 의례에서는 이러한 용도의 물품을 언급할 때 ‘用後還下次’ 또는 ‘用還次’로 표현하고 있다.

50) 尹仁鉉의 “「璿源系譜記略」肅宗4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第20輯(書誌學會, 2000)의 141쪽을 보면 自作板을 點正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 燒木과 소금 그리고 大釜가 나온다. 윤인현은 大釜 5坐 뒤에 서술된 “每一部 板子拾立式”을 자작판을 숙정하는데 필요한 또 다른 물품으로 추측하였다. 이는 앞에서 大釜를 세는 단위를 ‘坐’로 했다가 바로 ‘部’로

인 의뢰의 정밀한 분석을 통한 통계치만이 그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다.

冊匠이 粧冊房에서 「선원보략」을 장책할 때 사용하였던 도구들은 「선원보략 수정의례」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책장이 사용한 장책 용구를 쓰임별로 분류해보면 크게 床·剪板·그릇·裱接用品·기타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粧冊 用具

粧冊 用具	用途 및 材料	數量 및 크기	進排處
廣厚書案	-	介	繕工監
冊床	-	介	"
登床	-	坐	"
大剪板	冊子 刀鍊時 所用, 加時木	條	繕工監
中剪板	"	介	"
小剪板	"	介	"
裁切撥板(冊板)	"	片·立(長3尺)	"
強礪石	-	塊	軍器寺
軟礪石	-	塊(片)	"
刀子	裁紙 次	柄	平市署
燒木	作膠	介	司宰監
裱板	裱接	坐	繕工監
白紬(綿紬), 白苧布	裱接 所用 手巾 次	3 尺	濟用監
家豬毛	歸也 次	兩(斤)	平市署
乾淨(正)竹, 中竹	冊衣 裱貼後 乾淨 次 懸揭時	介	繕工監
小索(三甲)伍巨里(壹巨里)	冊衣 裱接 乾燥時 所用	張	"
(細)馬尾篩	膠末過篩	部	"
小羅 [소래기]	-	坐	工曹
方文里(方久里) [방구리]	-	坐(介)	"
小瓮器 [소옹기]	-	介	"
陶東海 [질동이]	-	坐	"

* 표에 사용된 ‘-’은 「선원보략수정의례」에 기록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를 바꾸어 서술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대부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작관을 숙정하는데 소용되는 대부의 크기를 추가하여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즉 대부는 자작관 10立씩을 삶을 수 있는 크기의 솥으로 조달하라는 것이다. 자작관 전체가 150立인데 한번에 10立씩 삶을 수 있는 솥 5坐로는 세 차례 자작관을 삶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자작관을 숙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상할 수 있다.

먼저 책장이 사용하는 床의 종류를 보면 廣厚書案·登床·冊床이 있다. 책장은 이 가운데 한 가지 床을 개인별로 사용하였다. 冊匠이 冊子를 刀鍊할 때는 加時木으로 만든 大剪板·中剪板·小剪板·裁切撥板을 사용하였다. 이 전판들은 刀子와 함께 책장이 개인별로 사용하도록 지급되었다.⁵¹⁾ 숫돌은 強礪石과 軟礪石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冊匠 5명 당 1개 정도로 함께 사용하였다.

책장이 배접에 사용한 용구는 褙板·家豬毛·白紬·白苧布·乾淨竹·小索伍巨里 등이다. 家豬毛는 歸也에 쓰기 위한 것인데, 歸也는 귀얄의 표기로 풀질을 말한다. 즉 가져모는 배접할 때 쓰는 풀비이다.⁵²⁾ 3尺의 白紬와 白苧布는 배접시 사용하는 수건이다. 冊匠은 冊衣를 배접할 때 백주나 백저포를 가지로 골고루 문지르는 것이다.⁵³⁾ 冊衣를 배접한 후 건조시킬 때는 乾淨竹과 小索伍巨리를 사용한다.⁵⁴⁾ 아마도 긴정죽을 양쪽에 나란히 세우고 새끼줄을 연결해 그 위에 冊衣를 걸쳐 놓아 건조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印出紙를 건조시키기 위해 長竹과 細繩을 이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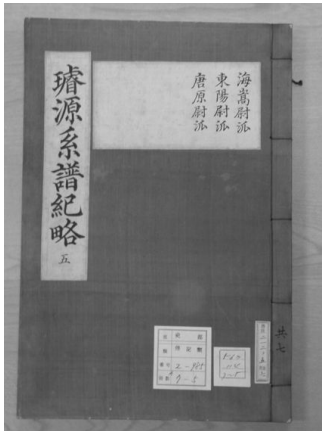
책장이 사용했던 그릇류는 馬尾篩·方文里·陶東海·小羅·小瓮器가 있다. 馬尾篩는 말총으로 만든 체로 膠末을 거를 때 쓰는 것으로 細馬尾篩'로 언급되기도 한다.⁵⁵⁾ 방구리와 질동이 등의 그릇들은 물이나 교말을 담는 데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3.2 粧冊 所用物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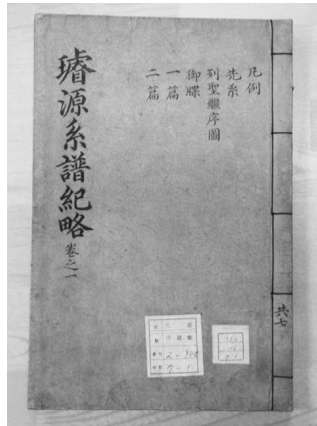
冊匠은 앞서 살펴본 粧冊 用具를 가지고 「선원보략」을 장책하게 되는데, 장책은 冊衣를 織衣로 할 것인지 紙衣로 할 것인지에 따라 소용되는 물품이 다르다.

51) 小剪板은 畫員이나 唱准이 작업할 때에도 사용되었다.
 52) 家豬毛는 刻手나 印出匠이 掃省할 때 쓰는 용구이기도 하다. 즉 판각을 하거나 인출할 때 나오는 찌꺼기들을 쓸어버리는 빗자루의 일종이다.
 53) 白紬와 白苧布는 「선원보략」을 담는 函櫃의 안을 바를 때도 사용된다.
 54) 巨里는 끈이나 새끼줄 등의 길이를 헤아릴 때 열 발을 단위로 이르는 말이다.
 55) 細馬尾篩는 漆匠이 太末을 거를 때 사용되기도 했다. 「瑤源譜略校正廳儀軌」(1739년) 五月初十日 甘結.

進上·進獻件은 冊衣를 織衣와 紙衣 두 가지로 장책한다.⁵⁶⁾<그림 1> <그림 2>



<그림 1> 1754년 「進源系譜記略」
織衣(장서각소장 2-985)



<그림 2> 1735년 「進源系譜記略」
紙衣(장서각소장 2-982)

1752년 이후에는 紙衣만으로 장책한 경우가 7회 있었으나, 織衣와 紙衣 두 가지 冊衣로 장책하는 것이 常例이다.⁵⁷⁾ 奉安件은 5건을 마련하는데 織衣나 紙衣 중 한 가지 冊衣로 5건 모두를 장책하였다. 반사건은 항상 紙衣로 장책하였다. 진상·진헌건과 반사건의 장책에 사용되는 물품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6) 織衣는 緞이나 紬와 같은 천으로 입힌 冊衣를 말하며, 紙衣는 楮注紙나 草注紙 등과 같은 종이를 가지고 만든 冊衣를 말한다.

57) 進上·進獻件을 紙衣만으로 粧冊 한 해는 1752년·1753년·1755년·1756년·1757년·1758년·1764년이다. 「선원보략」은 진상·진헌건과 봉안·반사건 외에 종부시나 교정청에 보관하는 官上件이 있다. 官上件은 반사건과 마찬가지로 紙衣로 장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官上件數를 奉安件數 항목의 紙衣에 해당하는 부분에 포함시켰다. 영조대 「선원보략」의 粧冊件數와 冊數는 <표 6> 참조.

<표 5> 粧冊 所用物品

所用物品		進上進獻件		頒賜件	進排處
		織衣	紙衣	紙衣	
冊衣	衣次	藍大段 : 長9寸, 廣6寸	草注紙 半張	楮注紙 半張	濟用監
	襍接	楮注紙 2張	楮注紙 2張	楮注紙 2張	長興庫
黃染水		·	每10卷 1瓶半	每10卷 1瓶半	濟用監
黃蜜		·	3分	3分	義盈庫
隔紙		草注紙 1張	草注紙 1張	楮注紙 1張	豐儲倉
空隔紙		草注紙 1張	草注紙 1張	·	"
列聖 御諱	付籤	紅方絲紬 : 全廣長 1寸5分	紅方絲紬 : 全廣長 1寸5分	紅方絲紬 : 全廣長 1寸5分	濟用監
	襍接	楮注紙	楮注紙	楮注紙	長興庫
長題目次		白綾 : 長5寸, 廣1寸	·	·	濟用監
長題目縮次		紅方絲紬 : 廣3分, 長1尺2寸	·	·	"
橫題目次		白綾 : 長2寸5分, 廣5寸	·	·	"
橫題目縮次		紅方絲紬 : 廣3分, 長1尺5寸	·	·	"
襍接		楮注紙	·	·	長興庫
膠末		2合	2合	1合	禮賓寺
冊糸		紅眞糸 4分	紅眞糸 4分	紅眞糸 4分	濟用監

* 표에 사용된 ‘·’은 「선원보략수정의궤」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1) 紙地

「선원보략수정의궤」에는 종이의 쓰임과 크기에 따른 다양한 종이 명칭이 나온다.⁵⁸⁾ 조선후기 왕실 및 中央各司에 소용되는 종이는 長興庫와 豐儲倉에서 진배하였다.⁵⁹⁾ 장홍고는 供上草注紙·楮注紙·厚白紙·草常注紙·油芘·油紙帑를 주관하였으며, 풍저장은 草注紙·楮常注紙·上品搗鍊紙·下品搗鍊紙·搗鍊楮注紙를 주관하였다.⁶⁰⁾ 「선원보략」의 粧冊에 주로 소용되었던 종이는 草注紙

58) 문헌에 나타난 종이의 종류와 분류에 대해서는 孫溪鎮, 「朝鮮時代 文書紙 研究」(韓國學中央研究院 博士學位論文, 2005), 16-53.
 59) “闕內外諸上司 所用紙地 長興庫豐儲倉 每朔定式進排 有違定式者 官員罷職 下吏治罪” 「續大典」 「工典」 雜令.
 60) 「六典條例」 「戶典」 長興庫, 紙色 豐儲倉, 紙色

와 楮注紙이다.⁶¹⁾ 초주지는 진상진헌건의 紙衣와 隔紙 및 空隔紙에 소용되었다. 저주지는 반사건의 紙衣와 隔紙에 소용되었고, 「선원보략」 모든 件의 배접에 소용되었다. 즉 冊衣와 列聖御諱 付籤과 長題目 및 橫題目의 배접에 들어갔다.

2) 膠末

膠末은 冊衣를 襟接하기 위한 것으로 「선원보략」 모든 件의 매책마다 2合式 소용되었다.⁶²⁾ 교말은 禮賓寺에서 공급하였으며, 교말을 아교로 만들기 위한 燒木은 司宰監에서 공급하였다.⁶³⁾ 장책에 필요한 膠末을 진배하는 전후 문맥에 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교말은 冊匠이 직접 가공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⁴⁾

3) 黃染水

「선원보략」 紙衣는 黃染水로 물들이는데, 紙衣 每 10卷에 황염수 1瓶半 정도가 들어간다.⁶⁵⁾ 紙衣 入染은 교정청에 있는 進上·進獻件 紙衣로 쓰일 草注紙와 頒賜件의 紙衣로 쓰일 楮注紙를 濟用監에서 가져가 이루어졌다.⁶⁶⁾ 진상·진헌건 紙衣는 初染과 再染 두 차례에 걸친 入染을 하였다.⁶⁷⁾ 입염에 필요한 황염수는 교정청에서 장책에 소용되는 물품을各司에 감결로 내릴 때 포함되어 있었다.

61) 「度支準折」에 기록된 저주지는 세로 2尺2寸5分, 가로 1尺7寸으로 「續大典(1746년)」 「雜令」 工匠條에 언급된 저주지의 크기인 세로 1尺6寸, 가로 1尺4寸과는 차이가 있다. 「度支準折」에 나타난 초주지와 저주지의 크기와 가격의 비교는 손계영, 앞의 논문, 47쪽 참조. 「度支準折」의 筆寫 시기를 손계영은 1875년에서 1880년 사이로 추정하였다.

62) “小麥一斗全取膠末 則八升六合六夕 其火一斗二升五合” 「六典條例」 「禮典」 禮賓寺 所管貢物

63) 禮賓寺는 賓客의 燕享과 宗宰의 供饋를 관장한다. 「六典條例」 「禮典」 禮賓寺 司宰監은 어물·육류·식염·연료목 등을 관장한다. 「六典條例」 「戶典」 司宰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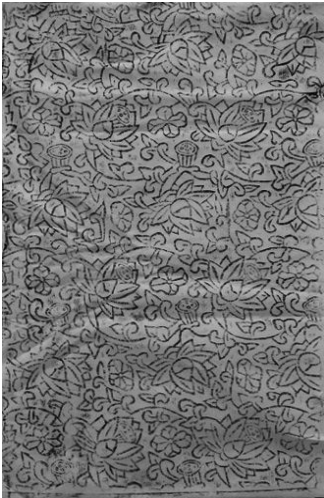
64) 「선원보략수정의례」에는 膠末 외에 魚膠·糊末·眞末이 접촉제로서 나타난다. 魚膠는 小木匠이 「선원보략」 진상진헌건을 담는 函橫를 만들 때와, 「선원보략」 舊板子를 補孔할 때 소용되었다. 眞末은 「선원보략」을 담는 函을 內塗할 때 사용되었다. 糊末은 「선원보략」의 제목을 적는 白綾을 배접할 때나 「선원보략」 付板時에 사용되었다.

65) “黃染水 每拾卷壹瓶半式 合三拾瓶” 「瑤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1735년), 二月十三日 甘結.

66) “右甘結 今此譜略開刊時 進上冊子衣次 入染次 草注紙三卷三張 頒賜二百件衣次 楮注紙參拾伍卷 入染次 受去事” 「瑤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1735년) 同月二十五日 甘結.

67) 「瑤源譜略改張儀軌」(1736년) 五月六日 甘結.

4) 黃蜜·菱花推造軍



<그림 3> 1735년 「璿源系譜記略」
菱花紋 (장서각소장 2-982)

「선원보략」의 冊衣를 紙衣로 할 때 필요한 것은 菱花板·黃蜜·菱花推造軍이다. 紙衣의 菱花紋을 추조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菱花板인데 「선원보략수정의궤」에는 能화판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顯宗實錄纂修廳儀軌」의 「印出諸具」 항목에는 自作板으로 만든 菱花板 1立이 나와 있다.⁶⁸⁾ 能화판은 板刻에 쓰이는 자작판에 能화문을 새겨 사용했던 것이다.<그림3> 菱花推造軍은 紙衣에 菱花紋을 밀어내는 인력을 가리킨다. 紙衣에 菱花紋을 推造하는데 드는 黃蜜의 양은 每冊 2分이 들어간다.

중부시는 能화 추조에 필요한 인원과 부역 일자를 적어 平市署에 能화 추조군의 定送을

감결로 요청한다. 평시서는 市廳을 감독하고 度量衡器의 검사와 물가등락에 대한 조사를 관장하는 관서이다. 평시서에 속한 각 전포 가운데 충실한 자는 隸內의 諸上司 각처의 수리와 도매 및 縫造軍으로 出役하도록 법전에 규정되어 있다.⁶⁹⁾ 「선원보략수정의궤」에는 평시서에 속한 전포에서 중부시에 다양한 명목으로 出役되었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⁷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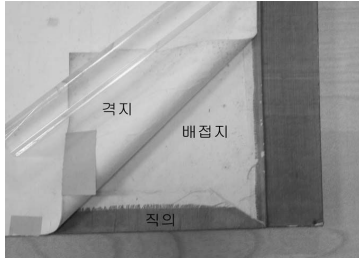
1753년 교정청에서 菱花推造軍을 요청하는 감결을 평시서에 내리자, 戶曹 書吏와 平市署 書員의 보고가 들어왔다. 보고의 내용은 근래 兵曹에서 衛將所軍으로

68) “菱花板一立 以自作板用 菱花所用黃蜜三兩” 「顯宗實錄纂修廳儀軌」 「印出諸具」.
 69) 평시서에 속한 각 전포 가운데 충실한 자는 分數를 정하여 1分에서부터 10分까지 國役에 응하게 하였다. 「六典條例」 「戶典」, 平市署, 各廳.
 70) 중부시는 菱花推造軍 외에 縫造軍과 塗楮軍을 평시서에 요청하는 감결을 내리기도 했다. 봉조군은 「선원보략」 진상시 필요한 紅袖襟을 만들 때 들어가는 紅鄉絲를 縫造하였고, 도매군은 印出廳을 도매하였다. 「璿源譜略改張儀軌」(1736년) 四月十八日 甘結, 「璿源譜略校正廳儀軌」(1739년) 五月初十日 甘結.

定送하여 능화추조군으로 보낼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교정청은 병조와 衛將所에 능화추조군의 名數와 出役 일자를 적어 정송을 요청하는 감결을 내렸다.⁷¹⁾

5) 隔紙와 空隔紙

進上·進獻件 「선원보략」은 每冊마다 隔紙와 空隔紙 한 장씩을 넣어 장책하였다. 그러나 반사건은 隔紙 한 장만이 들어갔다. 隔紙는 冊衣를 배접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冊衣의 뒷면에 붙인 面紙를 가리키는 것이다.<그림 4> 「國朝寶鑑」의 편찬 과정을 기록한 「國朝寶鑑監印廳儀軌」에는 「국조보감」 進上件을 장책할 때 每冊마다 面紙와 空隔紙 한 장이 들어갔다. 그러나 반사건에는 매책마다 面紙 한 장만이 소용되었다.⁷²⁾ 이로써 面紙가 隔紙를 일컫는 것임을 알 수 있다. 空隔紙는 隔紙와 서책의 본문 사이에 끼어 넣은 종이인데, 「선원보략」의 진상·진헌건을 장책에만 소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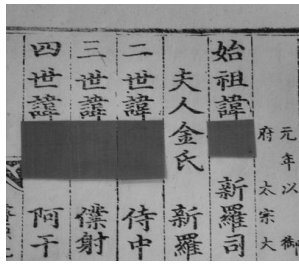


<그림 4> 1754년 「瓊源系譜記略」 織衣·裱接紙·隔紙(장서각소장 2-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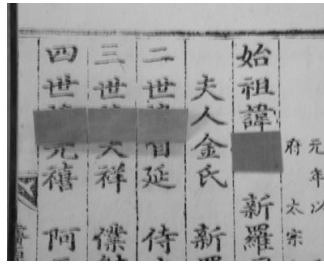
6) 列聖御諱 付籤

‘列聖御諱 付籤’이란 ‘被諱紙’를 지칭하는 것이다.⁷³⁾ 列聖의 御諱와 字를 종이로 덮는 것은 朗原君 李侃(1640~1699)이 「선원보략」을 처음으로 간행할 때에 의견을 내어 시행된 것이다.⁷⁴⁾

71) 「瓊源譜略儀軌」(1753년) 八月九日 甘結, 八月初十日 甘結.
 72) “進上寶鑑一件 共二十二冊所入 貼冊紙四十四卷十五張 衣次黃染草注紙十一張 後裱楮注紙二卷四張 面紙及空隔紙次草注紙各一卷二張---頒賜件五十件 共二十二冊所入 白紙四十四卷十五張 衣次黃染楮注紙十一張 後裱厚白紙二卷四張 面紙次楮注紙一卷二張” 「國朝寶鑑監印廳儀軌」(서울대학교 奎章閣, 1997) 315-323.
 73) ‘付籤’은 열성어휘의 被諱紙만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선원보략」을 담는 函櫃를 補孔할 때 사용되는 교말을 ‘入盛函 補孔時 付籤膠末’로 칭하고 있다. 「瓊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1735년) 同月三十日 甘結.



<그림 5> 列聖御諱 付籤의 앞
(장서각소장 2-985)



<그림 6> 列聖御諱 付籤의 뒷면(장
서각소장 2-985)

낭원군 이간은 列聖의 世系와 子孫을 정리한 「선원보략」을 처음으로 저술하여 濬源錄이 체계적으로 편찬되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다. 열성어휘 부침은 「선원보략」 모든 件에 濟用監에서 공급한 紅方絲紬를 사용하였다. 홍방사주를 열성어휘 위에 붙일 때 뒷면을 楮注紙로 배접하여 뽕뽕함을 유지하도록 하였다.⁷⁵⁾

<그림 5> <그림 6>

열성어휘 부침의 크기는 항상 가로와 세로가 같은 정사각형이다. 따라서 부침의 크기를 말할 때 ‘全廣長’을 앞에 붙이는 것이다.⁷⁶⁾ 영조대 「선원보략」 열성어휘 부침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았다. 全廣長 1寸5分이 주를 이루었고 다음으로 3寸이 많았다.

7) 長題目・橫題目

「선원보략」의 冊衣를 織衣로 할 경우에는 白綾으로 만든 長題目과 橫題目을 붙인다.⁷⁷⁾ 長題目은 書名이나 冊次를 먹으로 적어 서책의 왼쪽 상부에 세로로 붙인다. 橫題目은 서책의 내용을 알기 쉽게 編目을 적어 서책의 상부에 가로로

74) “又所啓 郎原君謂 列聖御諱及字 當書于各位 以紙覆之 何如云矣 上曰 依爲之” 『濬源譜略開刊儀軌』(1679년) 四月初八日.

75) 선행연구에서는 紅方絲紬 바로 다음에 언급된 ‘楮接次 楮注紙’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윤인현, 『濬源系譜記略 肅宗46年本 刊行過程考』(서지학회, 2000) 148.

76) “列聖御諱付籤次 紅方絲紬全廣長壹寸伍分式貳尺柒寸 楮接楮注紙壹張半” 『濬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 二月十三日 甘結.

77) 「선원보략」 織衣의 長題目과 橫題目은 <그림 1> 참조.

붙인다. 일반적으로 장제목은 세로 5寸, 가로 1촌의 크기이고, 횡제목의 크기는 세로 2寸 5分 가로 5寸이다. 장제목과 횡제목의 가장자리는 紅方絲紬로 선을 둘러 白綾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었다. 장제목과 횡제목에 쓰인 백릉은 열성어휘 부침과 마찬가지로 저주지로 배접하였다.

8) 冊絲

「선원보략」을 엮어 매는 冊絲는 「선원보략」 모든 件의 每冊마다 紅眞糸 4分씩 소용되었다. 冊絲는 濟用監에서 進排한 것을 尙衣院의 多繪匠이 合結한 것이다.⁷⁸⁾ 冊絲에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은 1751년 「선원보략수정의궤」에 나타난다. 중부시에서 호조에 관을 보내 頒賜件 改張에 쓰일 冊絲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때의 반사건은 1748년의 반사건 중에 수정하지 못한 건을 포함하여 241건이었다. 1751년의 반사건은 1735년부터 개장하여 일곱 번째 改張인 것이다. 17년 동안 일곱 번의 개장으로 冊絲는 찢고 끊어져 1751년 改張時에는 도저히 엮어 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에 중부시는 반사할 「선원보략」 241건의 初卷과 終卷 2冊에 해당하는 冊絲를 요청하였다. 冊絲 외에도 「선원보략」 初卷과 終卷의 上下 紙邊이 점점 줄어들어 나머지 권과 크기가 맞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⁷⁹⁾

이상으로 「선원보략수정의궤」를 분석하여 왕실의 冊匠이 粧冊 用具와 所用 物品을 가지고 粧冊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선원보략」의 粧冊에 필요한 소용물품들은 冊匠이 모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된 전문가들이 마련하였음을 밝혔다.⁸⁰⁾ 즉 紙衣의 入染은 濟用監에서 담당했으며, 능화문推造는 능화추조군이, 冊絲는 尙衣院의 多繪匠에 合結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선원보략」의 장책 과정에서 冊匠이 담당한 것은 먼저 冊紙의 몸체를 만든 후 剪

78) 「璿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1735년) 同日甘結(2월26일). 多繪匠은 「선원보략」을 담은 책을 장식하는 纓子の 金箋紙를 만들기도 하는 匠人이다.

79) 1744년 「선원보략」 수정시에도 반사건의 지면이 점점 감축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璿源譜略修正儀軌」(1744년) 十月二十五日 甘結.

80) 선행연구에서는 표지를 黃染하고 紋樣을 내며 끈을 紅染하여 裝冊하는 장인을 ‘裝潢工’이라 하였다. 千惠鳳, 「韓國 書誌學」(민음사, 1997), 105쪽

板에 올려 놓고 관심인 書口를 제외한 세 면을 깨끗하게 刀鍊 한다. 다음으로 冊衣를 배접하여 건조시킨 후 隔紙와 空隔紙를 붙여 완성해 놓은 몸체와 함께 冊絲로 엮어 매면 장책이 완성되는 것이다.

장책을 마친 「선원보략」은 임금에게 進上하고 왕세자에게 進獻한 후 奉安과 頒賜를 하게 된다. 「선원보략」 奉安은 한 件을 중부시에 먼저 봉안한 후 적당한 때를 기다려 外四處史庫인 鼎足山·太白山·赤裳山·五臺山の 璿源閣에 봉안하였다. 영조대 「선원보략수정의례」에 기록된 「선원보략」 수정시 粧冊 件數와 冊數는 <표 6>과 같다. 1725년부터 1731년까지 수정된 「선원보략」은 6卷 4冊이

<표 6> 英祖代 「璿源譜略」의 粧冊 件數와 冊數

番號	年度	粧冊 件數 및 冊數										菱花 推造軍	
		進上件數		進獻件數		奉安件數		頒賜件數	總件數		總冊數		
		織衣	紙衣	織衣	紙衣	織衣	紙衣	紙衣	織衣	紙衣	織衣		紙衣
1	1725	5	10	3	7	·	·	255	8	272	32	1088	10名
2	1727	5	10	3	7	5	1	·	13	18	52	72	-
3	1735	5	10	2	8	5	1	200	12	219	84	1533	15名
4	1736	2	3	1	2	5	1	201	8	207	56	1449	-
5	1739	3	5	2	3	5	1	201	10	210	70	1470	10名
6	1740	2	3	1	2	5	1	201	8	207	56	1449	3名
7	1744	3	·	1	·	-	1	201	4	202	28	1414	-
8	1747	2	3	1	2	5	1	201	8	207	56	1449	2名
9	1748	1	3	·	1	·	6	·	1	10	7	70	5名
10	1751	5	10	3	8	·	6	241	8	265	56	1855	5名
11	1752	·	3	·	1	·	5	241	·	250	·	1750	3名
12	1753	·	15	·	11	·	6	286	·	318	·	2226	6名
13	1754	1	2	1	·	5	1	290	7	293	49	2051	-
14	1755	·	2	·	1	·	6	290	·	299	·	2093	-
15	1756	·	2	·	1	·	6	286	·	295	·	2065	-
16	1757	·	2	·	1	·	6	286	·	295	·	2065	-
17	1758	·	2	·	1	·	6	286	·	294	·	2058	-
18	1759	4	·	2	·	5	1	286	11	287	77	2009	-
19	1764	·	2	·	1	·	5	200	·	208	·	1664	-
20	1771	선원보략 內入 2件과 進獻 1件만을 刊印하며, 五處史庫는 해당 張만을 보충.											
21	1772	-	-	-	-	-	-	-	-	-	-	-	-
22	1776	1	·	1	·	5	1	200	7	201	56	1608	-

* 표에 사용된 '·'은 「선원보략수정의례」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은 기록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고, 1735년에서 1759년까지는 8卷 7冊이며, 1764년에서 1776년까지는 18卷 8冊이다.⁸¹⁾ 頒賜件의 粧冊에서 1727년의 경우 반사건에 대해 거론하지 말라는 傳敎가 있었으며, 1748년에는 他日改張을 기다리라는 전교가 있어 해당 사항이 없게 되었다.

4. 맺음말

본고는 영조대 「璿源譜略修正儀軌」를 분석하여 조선후기 왕실의 冊匠과 粧冊에 관해 고찰하였다. 冊匠은 교서관의 잡직에 소속된 粧冊諸員으로 왕실서책 간행시 粧冊 전문가로서 활동하였다. 「선원보략」수정시 冊匠은 員役으로서는 최하위였으며 工匠 으로서는 첫 번째 지위에 있었다. 영조대 「선원보략」수정시 冊匠이 實役日子에 따라 받은 日給은 평균적으로 料米 3升과 價布 木1尺1寸이었다.

「선원보략」수정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주관한 宗簿寺는 校正廳을 設廳하여 업무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교정청은 필요한 인원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호조와 공조를 비롯하여 長興庫·繕工監·濟用監·平市署 등과 關이나 甘結 또는 牒모 등의 공문서를 주고 받았다. 이들 공문서는 「선원보략」수정에 들어가는 각종 물품의 구체적인 분량과 공급 시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인원의 수급과 징발에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어 당시의 인력과 재정 상황들을 알 수 있었다.

「선원보략」의 粧冊은 「선원보략」의 간행 과정의 마지막에 이루어졌다. 「선원보략」의 初草와 中草의 과정에서는 假衣와 열성어휘 부침을 만드는 것으로 粧冊이 간단하고 양이 적어 보통 한 두명의 冊匠이 장책을 하였다. 인출을 마친 「선원보략」의 粧冊은 進上·進獻件과 奉安件 및 頒賜件에 따라 소용물품의 격차가 있었다. 진상·진헌건은 봉안건과 반사건에 비하여 織衣와 紙衣 두 가

81) 尹仁鉉, “「璿源系譜記略」의 板本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32-33.

지 형태로 장책하였으며 空隔紙가 들어갔다.

영조대 「선원보략」 수정시 5회 이상 粧冊을 담당하였던 책장은 朴有信·趙贊成·李厚成·李枝成·李枝萬·金壽聃 등이다. 冊匠은 교정청뿐만 아니라 國葬都監·遷奉都監·禮葬都監 에도 동원된 사실이 관련 의궤에 나타나 있어 이들의 활동은 광범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趙贊成은 1725년 7월에 「濬源譜略」 修正이 진행되고 있는 校正廳과 御筆刊行을 주관하고 있던 宗親府에 동시에 참여하였다. 조찬성과 같이 20여년 이상 교서관 외에 여러 도감에서도 활동하였던 冊匠에 대한 개별연구가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畫員이나 寫字官의 계통에 관한 연구가 이미 이루어진 반면, 冊匠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아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家系를 이어 활동한 책장들의 계통과 활동상을 파악한다면 좀 더 새로운 사실들을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논문은 조선 후기 왕실서책의 粧冊 전문가로서 冊匠을 새롭게 조명하였으며, 「선원보략」의 장책 과정을 고찰하여 왕실서책의 粧冊에 대한 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서울 大學校 奎章閣, 1997)
- 「國朝寶鑑監印廳儀軌」(서울 大學校 奎章閣, 1997)
- 「國朝摺紳案」(李萬運 纂)
- 「大典會通」(서울 大學校 奎章閣, 1998)
- 「萬機要覽」(민족문화추진회, 1982)
- 「書雲觀志」(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 「濬源譜略開刊儀軌」(1735, 장2-3845)
- 「濬源譜略改修時儀軌」(1725, 장2-3838)
- 「濬源譜略修改時儀範」(1727, 규14022)
- 「濬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1735, 장2-3845)

- 「璿源譜略改張儀軌」(1736, 장2-3839)
「璿源譜略校正廳儀軌」(1735, 규14029)
「璿源譜略改修儀軌」(1740, 장2-3850)
「璿源譜略修正儀軌」(1747, 장2-3846)
「璿源譜略修正儀軌」(1751, 규14039)
「璿源譜略儀軌」(1753, 장2-3843)
「璿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1754, 장2-3844)
「璿源譜略修正時儀軌」(1755, 장2-3852)
「世祖惠莊大王實錄」
「成宗康靖大王實錄」
「續大典」(서울대학교 奎章閣, 1998)
「侍講院志」(서울대학교 奎章閣, 2003)
「六典條例」(서울대학교 奎章閣, 1999)
「度支準折」(규MF84-16-207-B)
「顯宗實錄纂修廳儀軌」(서울대학교 奎章閣, 2003)
「藏書閣所藏儀軌解題」(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2)
「규장각 소장 儀軌 종합목록」(서울대학교 奎章閣, 2002)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1」(서울대학교 奎章閣, 2003)
金 赫. “藏書閣 所藏 儀軌의 成格.” 『藏書閣所藏儀軌解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2.
姜寬植.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 돌베개, 2001.
柳富鉉. “中國 古書 裝訂考.” 『書誌學研究』 第19輯(書誌學會, 2000).
朴廷蕙. “의궤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화원” 『美術史研究』 第9號 미술사연구회 1995).
박이택. “서울의 숙련 및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1600-1909 『의궤』 자료를 중심으로.”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裴賢淑. 「朝鮮實錄研究序說」. 태일사, 2002.
_____. “朝鮮朝 保存圖書館의 始原과 發展” 『書誌學研究』 第27輯(書誌學會, 2004).

- 孫溪鎭, “朝鮮時代 文書紙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博士學位論文, 2005.
-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尹仁鉉. “「璿源系譜記略」의 板本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_____. “「璿源系譜記略」開刊過程과 始刊本 分析.” 「書誌學研究」第14輯(書誌學會, 1997).
- _____. “「璿源系譜記略」肅宗4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第20輯(書誌學會, 2000).
- _____. “「璿源系譜記略」肅宗2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第22輯(書誌學會, 2001).
- _____. “「璿源系譜記略」肅宗28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第27輯(書誌學會, 2004).
- 張慶姬. “朝鮮後期 凶禮 ‘都監’의 匠人 研究.” 「美術史論壇」第 8號(한국미술연구소, 1999).
- _____. “朝鮮後期 王室의 玉工藝匠人 研究” 「美術史研究」第5號 미술사연구회, 2001).
- 朱賽虹. 「古籍修復技藝」. 文物出版社, 2001.
- 千惠鳳. “韓國典籍裝潢考.” 「大東文化研究」第25輯(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研究院, 1990)
- _____. 「韓國 書誌學」. 민음사, 1997.
- 韓永愚. “조선시대 《儀軌》 편찬 과 現存 儀軌 조사 연구.” 「韓國史論」48(서울대학교 人文大學 國史學科, 2002).
- 洪順敏. “조선후기 王室의 구성과璿源錄.” 「韓國文化」11(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0).
- _____. “조선후기 《璿源系譜記略》開刊의 추이.” 「奎章閣」13(서울대학교奎章閣, 1990).
- Claus Maywald-Pitellos. “15-16세기 유럽의 서적제본.” 「2004 청주직지축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서지학회, 2004).